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88
----------	-----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04월 03일
3.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4월 22일 1차상정·검토보고·심사보류】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4월 24일 2차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장사시설의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립장사시설의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7조제4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 (2) 예산조치 : 협의완료
- (3)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나) 입법예고(2018.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의안번호 588번 서울특별시장 제출한 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서울특별시장 안 -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항 신설(안 제7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단서 신설></p>	<p>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④ ----- ----- ----- <u>다만,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의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u></p>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
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제 7조제4항)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결제 할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는 내용임.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조례의 시행기한을 '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여 시행하는 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을 운영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간을 정한 일몰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안정성, 시장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3 종합 의견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제7조제4항)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장사시설 사용료를 결제 할

경우에는 일정한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짐.

- 그러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간을 정한 일몰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안정성, 시장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로페이 사업의 홍보강화와 저변확대라는 면에서 상당한 중점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으나,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제한적인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1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 내용

□ 현황

- 제로페이 적용 가능 시설 : 2,75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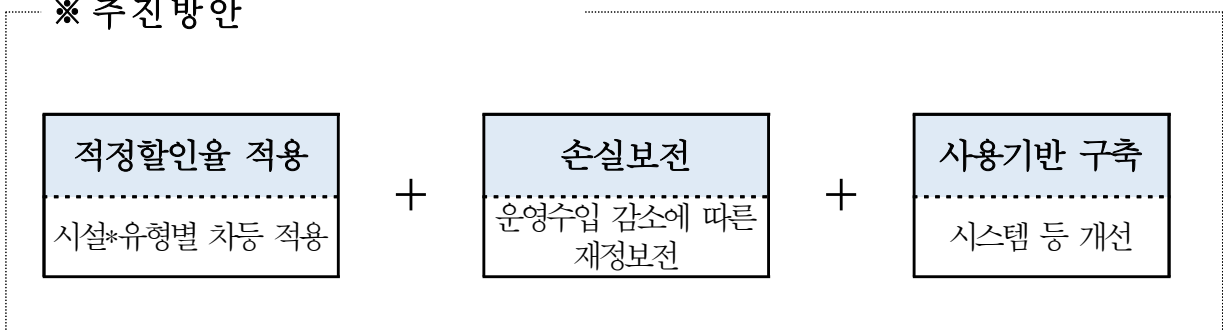
* 서울시 : 393개 시설(직영 164개, 투자출연기관 70개, 민간위탁 159개)

(단위 : 개)

구분	계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차시설	기타
계	393	38	87	20	71	5	134	38
시직영	164	9	68	6	57	-	6	18
민간 위탁	159	27	17	13	14	5	67	16
투자 기관	66	2	2	-	-	-	60	2
출연 기관	4	-	-	1	-	-	1	2

* 자치구 : 2,363개 시설(구별 평균 94개소)

※ 추진 방안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있음」

【 김소양 의원 】

·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출시한 이후 가맹점 확대를 위해 정말 말 그대로 예산과 행정력을 총 동원하였음.

·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체계까지 손대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도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됨.

첫째,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소상공인이 아님.

둘째, 공공시설 요금 감면 대상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는 계층이이며,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다둥이 가족 등 상위법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대상임.

셋째, 특정 정책의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이용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음.

넷째, 공공시설 요금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외수입은 결국 시민의 세금을 메꾸게 될 것임. 제로페이 홍보와 활성화가 문제라면, 홍보예산을 더 편성하는게 맞다고 봄.

-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들이 처리된다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특정 정책에 이용했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 김용연 의원 】

- 제로페이의 운영이 대하여 공공에서 일정기간 동안 결제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제로페이는 운영된 지 얼마되지 않기에 아직 시민들이 이용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공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 시킨다면 분명 사용이 간편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할 것이라 생각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 및 책임과 간편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출된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과 관련한 조례 개정예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8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장사시설의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립장사시설의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7조 제4항)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8.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의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p> <p>① ~ ③ (생략)</p> <p>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단서 신설></p> <p>⑤ ~ ⑦ (생략)</p>	<p>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다만,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의 사용료를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로페이 결제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

- 산출근거 : 11,796백만원(최근 3년간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평균 징수금액) × 5% = 590백만원

※ '제로페이' 사용율 100%로 가정하여 산출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김 정 숙 (02-2133-7432)